

김선화 / 4월+5월 / 기초 GS / 4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37475	14.5	11	0	0	25.5	1	2.94%	34
537790	17	8	0	0	25	2	5.88%	
539733	15.5	9.5	0	0	25	2	5.88%	
539816	15	9	0	0	24	4	11.76%	
542765	16	8	0	0	24	4	11.76%	
538166	13.5	9.5	0	0	23	6	17.65%	
222222	16.5	6	0	0	22.5	7	20.59%	
540015	11.5	11	0	0	22.5	7	20.59%	
537436	9	13	0	0	22	9	26.47%	
537564	12	9.5	0	0	21.5	10	29.41%	
538651	11	10	0	0	21	11	32.35%	
537439	12.5	8	0	0	20.5	12	35.29%	
539795	16	3.5	0	0	19.5	13	38.24%	
537428	12	5	0	0	17	14	41.18%	
535161	16.5	0	0	0	16.5	15	44.12%	
535255	11.5	4.5	0	0	16	16	47.06%	
537725	7	8.5	0	0	15.5	17	50.00%	
539220	8.5	6.5	0	0	15	18	52.94%	
539747	6.5	8	0	0	14.5	19	55.88%	
535325	14	0	0	0	14	20	58.82%	
535333	13	0	0	0	13	21	61.76%	
538471	7	6	0	0	13	21	61.76%	
539152	8	5	0	0	13	21	61.76%	
539206	9	3.5	0	0	12.5	24	70.59%	
535647	5	7	0	0	12	25	73.53%	
540696	8.5	3.5	0	0	12	25	73.53%	
111111	10	1.5	0	0	11.5	27	79.41%	
535218	11.5	0	0	0	11.5	27	79.41%	
539709	9	2.5	0	0	11.5	27	79.41%	
539084	8.5	1	0	0	9.5	30	88.24%	
540226	3	2.5	0	0	5.5	31	91.18%	
538830	5	0	0	0	5	32	94.12%	
539628	2.5	2.5	0	0	5	32	94.12%	
538047	2	0	0	0	2	34	100.00%	

김선화/4월/기초GS/4회/1,2번	채점자
	조은석

1. 채점기준

문제	설문	쟁점	배점	최고점	
1	1	결합저작물 검토	3	4	
		결합저작물의 취급 - 각각 단독저작물 취급	1		
	2	2차적 저작물 의의 및 판단기준	2	6	
		乙의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1		
		丙의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3		
	3		乙	소극 - 2	丙
			공표권 침해		
성명 표시권 침해			적극 - 4		
동일성 유지권 침해			소극 - 4		
2	1	乙의 지위 검토 - 배타적 발행권자	1	4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 검토	1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검토	2		
	2	甲의 지위 - 저작자 및 저작권자	2	5	
		저작자 甲이 배타적 발행권자 乙에게 가지는 권리 검토	3		
	3	배타적 발행권자 乙이 저작권 침해자 丙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5	
		乙이 丙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	3		

많은 분들께서 기준점인 25점을 넘지 못하셔서 낙담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S에서는 논점의 정확도를 올리는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 다소 까다롭게 채점하려고 하나, 실제 시험에서는 채점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관련 내용을 서술했다면 관대하게 점수를 부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초GS에서는 점수나 등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작권법 내용을 알아가고 답안의 형식을 배워간다는 점에 더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시간관리

어려웠던 회차였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시간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신 듯합니다.

백지답안에는 부분점수조차 부여되지 않으므로, 어느 한 문제가 어렵더라도 나머지 문제와의 시간배분을 고려하셔야 각 문제의 답안들을 균형 있게 쓰실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3회차 채점평에 언급한 ‘배점별 count-up 방식’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

3. 목차

대목차에 판단내용(쟁점)을 써주고, 세부목차로 그에 대한 판단근거(관련 조문, 판례, 사안)를 써주는 목차가 여전히 가장 논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문 - 설문 1의 경우 **판단해야할 내용** 두 가지(원곡의 성격과 취급)가 **직접 제시**되었는데, 이 경우, 김선화 변리사님 답안처럼

1. 원곡의 **성격** - 결합저작물
2. 원곡의 **취급** - 각각 단독저작물로 취급'

두 개의 대목차로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이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목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경우(예컨대, 취급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4. 내용

1문은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편이었으며, 정답률도 낮았습니다.

1문 - 설문 3에서 丙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음악 일부 이용’에 관한 판례 누락이 많았습니다.

2문은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1문보다는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문 - 설문 3에서 법 제54조 제2호의 ‘제3자’의 의미를 설명한 판례 누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틀리면서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히 복습하면서 내용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GS 기간도 파이팅입니다!!

[문제-1]

I. 식문(1)

0.5

저작저작권(vs. 공동저작권)

1. 논점

A는 개인 명의로 창작한 원고는 창작물임이 인정. ^{논점!} 변형하여

B. 이후 이를 재생. 함에 박기. 전영판이 게시하였다.

이이 경우 원고가 가지는 성질 및 취함을 고려한다.

2. 저작인접권의 태의 및 취지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병행 아니나 저작물은 공중
에게 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용적
응답 저작자. 영장사정자의 한미인 저작인접권도 변형한다

3. 저작인접권의 독립성 취지

특정한 사항이 유존한, 응모를 저작하여도 허락하는
응답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허락 없이 저작권
자립한다. 응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식문의 해설 - 원권의 성질과 취지

원고는 무이 편향하여 저작한 응모서에 대한

원작성과 그 작품과 저 작자와 같은 이이 관해서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 이를 이용하려면 ^{이득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적없는 저작인접권



이용이 있어서 제각각의 권리 범위를 바꿔서 이용행위를
을 받아야만 한다.

6 **주요 사항** **구속의 범주**
한 명입니다.
PERFECT!

II **특권**

1 **특권**

2차적 제각각을 가지는 '원격'이 아니라 (P)
이름의 2차적 제각각을 가지는 원본이 아닌 것이 문제
된다. 이와 같은 원본은 인정할 수 없다.

2 **침해의 종류**

① 유권한 제각각의 침해 ② 권한없는 이용행위
③ 복제권 행위의 침해 ④ 판매권 행위의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

3. **2차적 제각각**
~~원본~~ **이용행위인지 여부** - ~~특권~~ ~~특권~~ **특권**

(1) "이용행위" 여부 - 462 판례

제각각을 462 판례의 이용행위인 경우 제각각을
에서 복제하고 있는 물체·공인권, 2차적 제각각을 복제권 등
제각각의 이용행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

(2) 2차적 제각각을 작성한 여부 - 222

제각각을 222 판례의 제각각을 작성한 경우 222
판례를 적용하여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한다.

Wow...

II. 실문(3)

10.5

정답이 아니다!!

1. 도입

해라 2의 지적인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의
중요하다. 지적인정권의 침해 여부 이상 검토하고, 다른 침해
제외사유 상정한다. ~~특히 특허법 제 101조 제 1항 제 1호의 침해
부정사유 중 제 1호의 경우 상정한다~~

2. 지적인정권의 침해

지적인정권에는 공표권(제 17조), 실용신안권(제 22조), ~~특허권~~ 실용신안
(제 23조)이 있다. 이에 따라 각각 침해여부를 ~~각각~~
검토한다.

3. 공표권 침해 여부 - 2.가

(1) 공표의 ~~의사~~ 여부

공표(제 17조 제 1항)란 지적물을 공표 하는 행위로 공표의
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를 공표의 행위 사례

공표권은 지적물이 지적물을 공표하기 오는
행위에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지적물이
이러 공표 이상 이 지적물 공표권 침해
한정되고 볼수 있다.

(3) 사안

이 사안도 위와인 경우에는 2011년에 호 지적물



친 안도요인 ~~이~~ 원인이 이어 공정하게 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하게~~
정당성이 없는 등 공정한 행위에 ~~비행하리~~ 안

quest

4. 상징표시권 침해의 예 - 동영상 2부

① 상징표시권 침해 - 12부 1부

저작권은 저작권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에 그
신용 또는 이익을 침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상징표시권 침해

저작권은 이용자는 어느 저작물의 이용 또는 신음
거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 범위

실연자의 농악상위 권위 ~~등~~ 아우 또는
종래의 농악상위 아우 또는 ~~비판적~~ 필모가
있는 때 이를 ~~비판적~~

전날날날리 등 물레죽 같은 사용되어
됨!

④ 사안

이 사안에서 무엇 농악상위 권위 종래의
농악상위 아우 필모 부득이한 사정 있
는 지 공 으로 원 래 저 작 권 은 비 행 하 리 만
저의 ~~사~~ 필 모 는 아 우 의 필 모 가 경 이 는 이 를
포해하지 않아 상 징 표 시 권 침해

[문제-23] 13

I 생문 11)

1 2의 권리 검토

2은 무의 물건 A를 타인한테서 권자
취득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바,
배타적 발행권자에 해당한다.

2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 (제 27조 3항)

상항행위로 침해는 바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재산을 발해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1) 이용 및 표시의무 (제 27조 3)

① 배타적 발행권자는 배타적 발행권 목적인 재산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구 또는 일시 사용
하는 물건을 받은 자로부터 유래한 이내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발행에 따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복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각 복제물에 개성명의로
침해는 바에 따라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귀속의무 (제 27조 4항)

복제 재산을 대 발행자 하는 경우 그러하다

따라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II 선택 (2)

1. 무의 권리 검토

무는 2에게 배타적 저작물을 선량하게 믿었으며
무는 합당한 저작권자이 해당하는 바, 그 관계
에서 무의 권리를 검토한다.

2. 무의 권리

가) 저작자의 저작물 내용 부정 증명권 (제 58조의2 항)
배타적 발행권자와 저작물을 가지 이행을 평의
정상범위 내에서 내용을 부정하거나 증명을
할 수 있다.

나) 저작재산권자의 신격통지권 (제 60조)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자와 제 58조 항
같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손해 배상 기금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배타적
발행권의 신격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의
불가능하거나 이행 의사 없이 정당한 경우,
제 60조 항에도 불구하고 즉 배타적 발행권
신격을 통지할 수 있다. **good. 불가능성.**

3. 무의 권리의 제한

가)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의 생김 시 (제 58조 2항)



지식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권의 주체까지 이바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52조 4항)

지식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복제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II 실례 (2)

1 배타적 발행권 등의 효력 (제52조 2항 및 3항)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 등은
당국에 이바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미

해당 경우 당국에 이바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인 권리를 취득한 자라 ~~대항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고~~ ~~항해상의 경우에는~~
본문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3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 **당국에 이바하지 않으면**

(1) 그 권리 등록 여부 ()

무라 그 등록 저작물 () 등록부에 권리 사항은
등록한 사항이 없다 →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고에게 대항 여부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배타적 발행권의 생략의 등장은 제3자 발행인에게
해당하는, 또는 자체를 출판함으로써 그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므로, 그 등 등록 없이도 제3자
또에게 권을 행사하여 침해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바, 2이 취득할 수 있는 권은 침해권

4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검토

(1) 침해권지킴 (제123조)

침해 권리 및 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침해배상청구 (제125조 및 제126조)

배타적 발행권자로서 그의 행위로 인해 이익이 감소
하는 등 손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또에게
손해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형사상 권리 - 침해죄

지적재산권 행위를 권으로 침해죄 관가 가능하

[김]

- 이하 여백 -